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발의자: 이순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2.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수요를 위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운영사업의 현행화를 통해 복지혜택의 정당성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조문 신설(안 제3조제3항)
-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안 제7조)
-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지난 9월 제264회 임시회에서 영등포구 집행기관 소관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속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원안가결된 바 있음.
-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간제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근무여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한 실제 운영 중인 후생복지 사업을 제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후생복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됨.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집행기관과 동일한 취지에서 구의회 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기존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 정의를 정비함.
 -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81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주로 사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어 공공부문에 적합한 용어이므로 해당 사항을 반영함.
- 안 제3조제3항(신설)은 의회에 근무하는 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를 통해 의회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복지를 증진하여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중 「후생복지 운영」 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명절 선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설날·추석 각 1회, 총 2회 지급(1인당 5만원, 2명분)을 반영하여 2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는 현재 운영 중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명절(설·추석) 축하 선물 제공(제4항) ▲ 예방접종비 지원(제8항) 등을 신규로 규정한 것임.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무상보육 대상이므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제6항)”은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함.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 외에도 의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 기간제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통해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이미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규정하여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0
------------	-----

발의연월일: 2025. 11. .
발 의 자: 이순우 · 이규선 · 신흥식
양송이 의원(4인)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수요를 위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운영사업의 현행화를 통해 복지혜택의
정당성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 나.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조문 신설(안 제3조제3항)
- 다.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안 제7조)
- 라.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2)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라.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선택적”을 각각 “맞춤형”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결혼”을 “결혼, 명절(설·추석)”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치료비”를 “치료비 및 예방접종비”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선택적”을 “맞춤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맞춤형 복지제도란” ----- ----- ----- ----- ----- ----- -----. 4. -----<u>맞춤형</u>----- ----- -----.
<u>제3조(적용범위)</u> ① (생략) ② (생략) <u><신설></u>	<u>제3조(적용범위)</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u>
<u>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u>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u>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u> ① ----- ----- -- <u>맞춤형</u> -----.

<p>②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p>	<p>② 맞춤형 ----- ----- -----.</p>
<p>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u>범위</u>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u>범위</u> -----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u>범위</u> ----- -----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소속공무원의 생일, <u>결혼</u> 및 그 자녀의 출생·입학 축하선물 제공</p>	<p>4. ----- <u>결혼</u>, <u>명절</u> <u>(설·추석)</u> ----- ---</p>
<p>5. (생 략)</p>	<p>5. (현행과 같음)</p>
<p>6.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p>	<p><삭 제></p>
<p>7. (생 략)</p>	<p>7. (현행과 같음)</p>
<p>8.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u>치료비</u> 등 지원</p>	<p>8. ----- <u>치료비</u> <u>및 예방접종비</u> ----- ---</p>
<p>9. · 10. (생 략)</p>	<p>9. · 10.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 ----- ---.</p>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에서 규정한 <u>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2. ----- <u>맞춤형</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